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1
----------	-----

제출일자 : '98. 4.

제 출 자 : 제천시장

□ 제안사유

- 19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 개정, '96년 1월 19일 동법 시행령 개정, '96년 2월 5일 및 '97년 7월 19일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행 법규 및 지역실정에 맞는 폐기물관리 행정을 시행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조례명을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서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로 개정함
- 나. 폐기물의 종류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하거나 신설함(안 제2조)
- 다.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 및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등으로 일시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 제2항)
- 라.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새로이 정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 제3항, 별표 1)
- 마.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발생량과 기존의 폐기물 처리능력 등을 판단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토록 개정함(안 제8조)
- 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과 관련 제천시 재정 수익증대를 위하여 상업광고를 이면에 게재할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11조 제3항)
- 사. 쓰레기처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지정 방법 및 지정된 장소를 위탁관리 할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18조 내지 제19조)
- 아. 판매용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시 사재기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쓰레기 처리에 대한 수수료의 자립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도 등을 고려하여, 종전 조례에 명문화 하였던 판매용 쓰레기봉투 가격을 시장이 고시하도록 개정함(안 제20조)

- 자.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토록 신설함(안 제24조)
- 차.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할 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
- 카.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26조)
- 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규모를 신설함(별표 7)
- 파. 시장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거나 추가 규정함(별표 8)

개정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조, 제5조의2, 제7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26조, 제30조, 제39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의2, 제47조,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4 제2호 가목(2)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97. 5)

입법예고 결과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없음

개정조례안 : 불임참조

관계법령 발췌 : 불임참조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 가능폐기물, 대형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영 제2조제2항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쓰레기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가능 폐기물중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생처리 가능 폐기물로서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공사등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서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를 말한다.
7.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영 제4조 별표 2의 종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령에 적용토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과 제천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 2 장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을 고시한다.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적용한다.)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 및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등으로 일시에 소량배출되는 폐기물은 시멘트 포대나 마대 등에 담아 묶어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후 배출하거나 배출신고필증을 지참하여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시처리장에 반입할 수 있다.

③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대형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작성하고 시수입증지를 구입·부착하여 제출한후 배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해당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방법,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지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기록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배출되지·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불분명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등의 대행) ①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수 있다.

1. 시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확장등으로 기존의 인력·장비로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기타 시장이 쓰레기의 효율적 수거·운반 또는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작업물량등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시장은 시장이 정한 대행비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은 제3항의 대행비용의 명확한 산정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원가 계산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비용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 및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①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령·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발생량과 기존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또는 청소능력 등을 고려하되, 폐기물처리업 허가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생활환경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년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사항
3.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실태
4.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장의 비치 및 기록, 보존상태등

②시장은 폐기물처리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사항 이행준수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제 3 장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도

제10조(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가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분해성 폴리에틸렌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옅은 청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옅은 노랑색으로 한다.

③쓰레기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용도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을 적용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제천시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명 및 연락처, 단체표준품질인증 승인번호와 품질인증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쓰레기종량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천시 재정수익 증대를 위하여 상업광고를 이면에 게재할 수 있다.

④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처벌 규정 등에 관한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제10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⑥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시장은 쓰레기 규격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봉투 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수 있다.

②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쓰레기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거주지 생활주변, 가로변, 관광지, 공원, 강, 하천등을 대상으로 “청결의 날”을 전개하거나, 공공지역의 폐기물처리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관·단체 및 읍·면·동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예정지 약도
3. 기타 변경에 필요한 서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한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할때에는 인구·면적·가옥·사업장등 지역여건을 고려, 지역주민의 이용상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를 지정하고 이들 업소에 대해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는 별지 제3호와 같다. 다만, 유원지, 공원,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사무실이나 출입구 인접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4조(봉투판매자의 준수사항등) ①봉투판매자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유통봉투의 판매금지
4. 모조봉투 유통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
5. 기타 봉투판매에 관한 행정지시사항의 이행등

②봉투판매자는 읍·면·동장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 할 수 없다.

③읍·면·동장은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1항 각호의 준수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시장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해제된 자는 즉시 쓰레기봉투판매지정서, 표지판, 봉투잔량을 관할 읍·면·동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표지판 분실자는 제작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봉투잔량을 반납받은 읍·면·동장은 쓰레기봉투 잔량 반납자에 대하여 즉시 공급가격을 적용 현금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 하였을 때에는 이용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즉시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시장은 이 조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제작업자 및 봉투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수 있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제작업자 또는 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17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된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②체육시설, 각종 공연 및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하여는 각각 당해 관리주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규정(환경부 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지정등) ①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별도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이하 “지정된 장소”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장소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년월일, 기간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가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등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지정된 장소의 관리 위탁) ①시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장소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 및 단체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관리구역, 면적, 위탁기간
2. 지정된 장소의 이용 수수료
3. 사무소의 소재지
4. 운영인력
5. 쓰레기처리비용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에 관한사항
7. 기타사항등

제 4 장 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

제20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일반용봉투의 수수료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며 공급·판매가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의거 산정하여 시장이 고시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시매립장의 처리비는 별표 6과 같다.
3. 제5조제2항의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시처리장에 반입할시에는 처리비만 징수한다.
4.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자에게 시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5. 연탄재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1호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쓰레기처리에 대한 수수료의 자립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도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일반용봉투의 판매대금은 공급할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한 영수증을 확인후 쓰레기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수수료는 시세부과징수규칙 규정에 의한 수입금 출납원 및 그 사무를 위임받은자가 매일 현장에서 현금영수부에 의하여 징수하여 익일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세정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제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규정에 의거 위촉된 통·리·반장인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1인당 매월 60ℓ 범위내에서 기타 감면자에게는 세대당 매월 60ℓ 범위내에서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쓰레기봉투의 현금 교환) ①쓰레기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사유 등으로 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교환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읍·면·동장으로부터 교환사유 및 교환수량 등의 확인을 받아 봉투판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봉투판매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확인받은 쓰레기봉투의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5 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등

제2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2.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15만제곱미터미만인 공장을 개발·설치하고자 하는 자
3.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이하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설치하고자 하는 자
4.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이상 100만제곱미터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택지 개발 사업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직접설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2. 재활용가능 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의 분리 및 보관을 위한 시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0조 별표7의 규정에 의해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규모는 별표7과 같다.

제25조(기타 사업장의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기준)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지역에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적정하게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1.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변의 휴게소
2. 여객터미널법에 의한 여객터미널업자
3. 도매업진흥법 규정에 의한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터
4. 석유사업법 규정에 의한 주유소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②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기준은 별표 제7호와 같으며 종이류·병류·캔류·플라스틱류등 시장이 정하는 분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자는 용기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오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수·교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도로변에 설치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표지판을 부착하는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시장은 설치된 용기가 생활환경, 도시미관 및 교통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설치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26조(재활용가능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①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다.

②위탁처리한 경우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성폐기물에 대하여는 시매립장에 무상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제 6 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7조(과태료 부과기준) ①시장은 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제8과 같다.

③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37조 및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제9와 같다.

제28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시장은 제27조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청문) ①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이 종료된 다음날 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3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사항 등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한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의 징수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 일부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행정처분 및 청소대행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쓰레기봉투가격에 대한 경과조치)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은 시장이 별도의 가격을 고시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 별표 1 > 대형폐기물 품명 및 수수료 기준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냉 장 고	500ℓ 이상	8,000	
	300ℓ 이상	6,000	
	300ℓ 이하	4,000	
텔레비전	42인치이상	5,000	
	12인치이상	3,000	
세탁기	모든규격	4,000	
에어콘	264㎡형 이상	8,000	
	66㎡형 이상	5,000	
	66㎡형 미만	3,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2,000	
탈수기	모든규격	2,000	
공기청정기	모든규격	2,000	
장 농	120cm 장 1쪽	15,000	
	90cm 장 1쪽	10,000	
소 파	대형 6인용	8,000	
	소형 4인용	5,000	
책 상	양수, 대형	5,000	
	편수, 소형	4,000	
식 탁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피 아 노	어프라이트	10,000	
	그 랜 드	15,000	
보일러통	대 형	8,000	
	중 형	5,000	
	소 형	3,000	
서 랑 장	5단 이상	4,000	
	4단 이하	2,000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신 발 장	모 든 규 격	2,000	
문 갑	모 든 규 격	3,000	
화 장 대	모 든 규 격	3,000	
장 식 장	모 든 규 격	4,000	
침 대	1인용 침 대	10,000	
	1인용 매트리스	5,000	
	2인용 침 대	15,000	
	2인용 매트리스	8,000	
캐 비 넷	모 든 규 격	4,000	
화일캐비넷	4단 이상	3,000	
	3단 이하	2,000	
책장 및 장식장	90센티미터 × 180센티미터이상	7,000	
	90센티미터 × 180센티미터미만	5,000	
쌀 통	80키로그램(용량)이상	4,000	
	80키로그램(용량)미만	3,000	
의 자	철 제	2,000	
	기타재질	3,000	
쌍 크 대	90센티미터이상	5,000	
	90센티미터미만	4,000	
상	6인이상	3,000	
	6인미만	2,000	
컴 퓨 터	본 체	2,000	
	키 보 드	1,000	
	모 니 터	2,000	
	프 린 터	2,000	
간 판	60센티미터 × 180센티미터이상	5,000	
	60센티미터 × 180센티미터미만	3,000	
욕 조	모 든 규 격	7,000	
양 탄 자	모 든 규 격	3,000	
변 기	모 든 규 격	4,000	
진 축	모 든 규 격	4,000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벽 사 계	1미터이상 1미터미만	2,000 1,000	
정 수 기 유 모 차 식기 건조기 가 습 기 전 기 밥 솥 진공 청소기 선 풍 기 타 자 기 자 전 거 필 채 어 난 로 전기·가스스토브 재 봉 틀 빨래 건조대 보 행 기 대 자 리	모 든 규 격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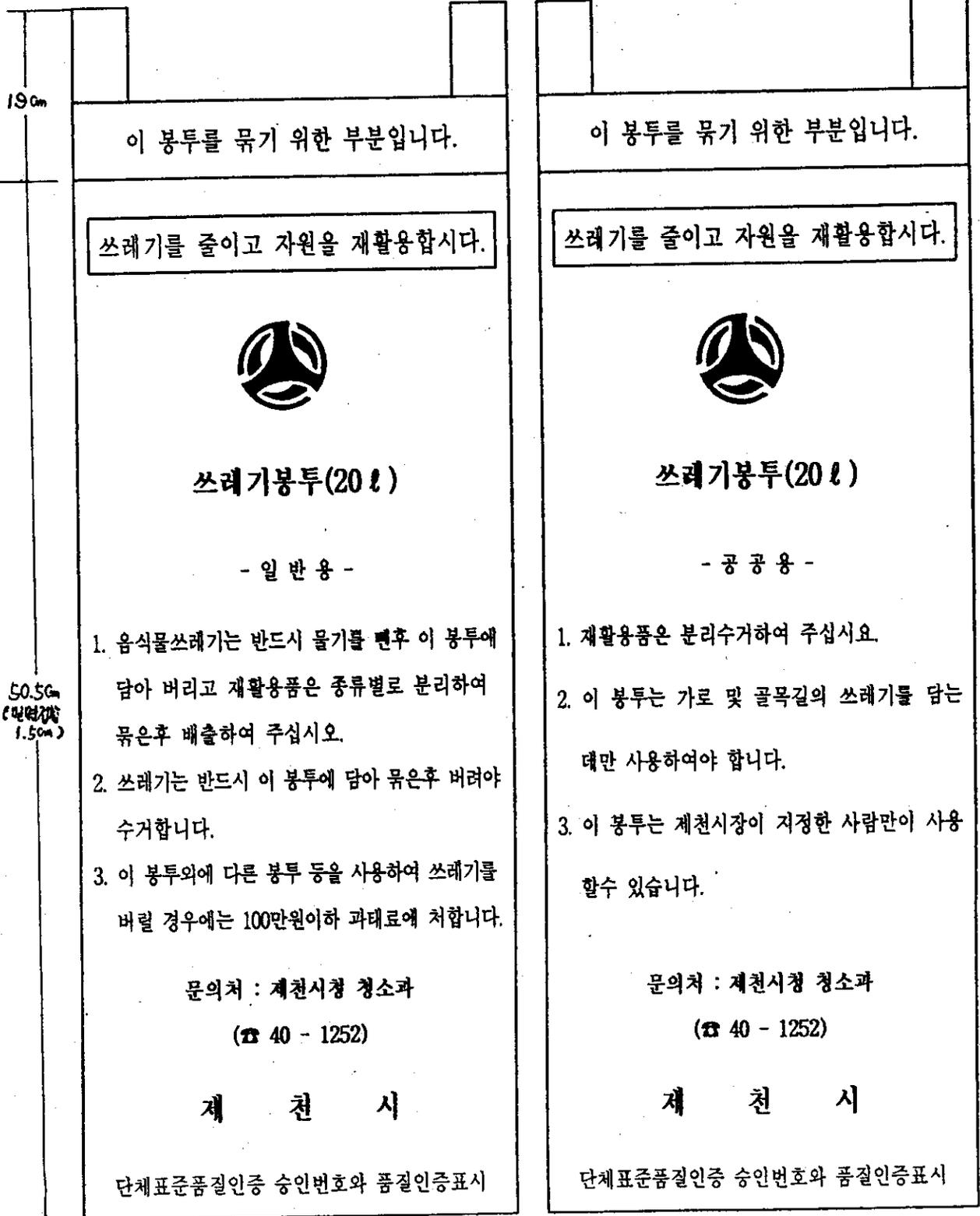
1. 상기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

< 별표 2 > 재활용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종이첩, 팩 - 상자류(과장·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3. 병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료수병, 기타병 - 농약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뚜경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꽂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수 있음 - 물로 헹군후 음료수병등과 섞이지 안도록 별도 배출
4. 고철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5. 플 라 스틱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T병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페스티로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경을 제거한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 「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재 감량화 지침」(환경부 고시 제95-90호, '95. 8. 5)에 의하여 제조자들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레인지, 퍼스널 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폴 완충재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 ※ 1회용 컵라면 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등)로 코팅된 페스티로폴은 제외

< 별표 3 >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 별표 4 >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 주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 고득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소(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소(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별표 5 >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

$$\text{최종판매가격} = \text{쓰레기 처리비용} \times \text{수수료자립도} + \text{봉투제작비} + \text{판매이익}$$

- 주 : 1) 쓰레기 처리비용은 생활쓰레기를 수거·운반·최종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 2) 수수료 자립도는 기존 자립도·물가에 미치는 영향·주민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부담율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 3)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적용한다.
- 4) 판매이익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쓰레기 처리비용 × 수수료 자립도 × 0.09로 산정한다.
- 5) 최종판매가격은 10원단위로 절상 조정한다.
- 6) 쓰레기봉투 공급가격은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별표 6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 과 대 상	부과기준	금 액(원)			비 고
		계	수집·운반	시매립장 처 리 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톤(m ³)당	18,000	10,000	8,000	
건설폐기물	톤(m ³)당	18,000	10,000	8,000	

※ 건설폐기물의 범위는 제2조 제6호를 말한다.

※ 건설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매립장에 반입할 경우에는 처리비만 징수한다.

< 별표 7 >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규모

시설명	시설명	설치규모
폐기물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자원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용량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인 기준 1세대당 1일 음식물쓰레기배출량 1kg 적용 예) 100세대인 경우 → 100세대 × 1kg/일 = 100kg/일 ○ 설치대수 : 입지여건에 따라 지정 ○ 설치장소 : 배출자가 쉽게 이용할수 있는 부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기보호 및 우기시 작업을 고려 PRP 지붕 등을 시공
폐기물보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품 분리보관시설 	<p><제24조, 제25조 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 량 : 종이류, 캔류, 플라스틱류, PET병류, 병류(5조) ○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정 용기설치하되 3일이상 보관할수 있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쓰레기 보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 량 :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 설치 ○ 용기규격 : 자동상차용기 1,100ℓ ○ 설치기준 : 건물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정용기 설치

과태료 부과기준(폐기물관리법 적용)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법 제7조)			
가.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50	50	50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	150	200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150	200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 폐기물의 양이 1톤미만시	200	300	500
2) 폐기물의 양이 1톤이상 5톤미만시	300	300	500
3) 폐기물의 양이 5톤이상시	400	500	50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 폐재류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및 동법 제26조 폐기물처리업자, 동법 제44조의2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는 제외)			
1) 폐기물의 양이 1톤미만시	500	700	1,000
2) 폐기물의 양이 1톤이상 10톤미만시	600	800	1,000
3) 폐기물의 양이 10톤이상시	700	1,000	1,000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2.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하거나 배출 및 처리방법을 위반 한자(법 제15조)			
가.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0	200	500
나. 폐기물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않는 경우	100	200	500
다. 폐기물을 인구밀집지역, 하천등에서 노천소각 행위를 할 경우	100	200	500
3.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 제1항)	300	500	1,000
4.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6조 제2항)	300	500	1,000
5. 폐기물관리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24조 제3항, 제41조)	300	500	1,000
6.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법 제24조 제5항)	1,000	2,000	3,000
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 신고를 한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법 제30조 제3항 및 제44조의2 제1항)	1,000	2,000	3,000
8.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 제4항)	1,000	1,000	1,000
9. 기술관리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법 제39조 제1항)	1,000	1,000	1,000
10.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 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			
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300	400	500
나. “가”이외의 교육대상자	300	500	1,000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1.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43조)	1,000	1,000	1,000
12.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43조 제1항)	300	500	1,000
13.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자가 사용정지 또는 사용 제한 명령을 위반 한 자(법 제44조의2 제3항)	1,000	2,000	3,000
14.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 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7조 제1항)	1,000	1,000	1,000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양수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 별표 9 >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천원)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자원의 절약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3조 제2항)				
	가. 재활용 지정사업자 및 제1종 지정사업자의 경우	2,000	2,500	3,000	
	나. 제2종 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의 경우	1,500	2,000	3,000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제2항)				
	가. 포장공간비율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기준보다 25%미만 초과한 때	1,500	2,000	3,000	
	2) 기준보다 25%이상 50%미만 초과한 때	2,000	2,500	3,000	
	3) 기준보다 50%이상 초과한 때	2,500	3,000	3,000	
	나. 포장횟수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기준보다 1회를 더 포장한 때	1,000	1,500	3,000	
2) 기준보다 2회를 더 포장한 때	1,500	2,000	3,000		
3) 기준보다 3회이상 더 포장한 때	2,000	2,500	3,000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천원)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자원의 절약및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 률	다.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	2,500	3,000	
	라. 완구, 인형 또는 종합제품의 포장에 발포 پلی스텔계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	2,500	3,000	
	마.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지침 준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	2,500	3,000	
	바. 가전제품의 포장용 완충재의 감량화 및 회수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	2,500	3,000	
	3. 1회용품의 사용자재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제5항)				
	가.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66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 제외)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 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	2,000	3,000	
	나. 객실과 객실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 제외)사용 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00	2,500	3,000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천원)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자원의 절약및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 률	<p>다.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접객 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 사용 자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라.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물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1) 일반목욕장업(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2)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 터키탕, 복합목욕탕)</p> <p>마. 객실이 7실이상인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1) 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업 2) 여관업 및 여인숙업</p> <p>바.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영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300	500	1,000	
		1,000	2,000	3,000	
		1,500	2,500	3,000	
		1,500	2,500	3,000	
		1,500	2,500	3,000	
		1,000	2,500	3,000	
		1,500	2,500	3,000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천원)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자원의 절약및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 률	사. 백화점에서 재활용품의 교환·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	2,500	3,000	
	아. 도시락 제조업체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00	2,500	3,000	
	자. 가정용품의 도매업, 종합소매업(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소매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 제외)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 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거래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 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 상영업, 연극·음악 및 예술관련 사업에서 합성 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품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	2,000	3,000	
	4.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분리보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 제2항)				
	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300	500	1,000	
	나. 다량배출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800	900	1,000	
	5.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자(법 제34조 제3항)	300	500	1,000	

-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 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 호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상 호			
신청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지 정 내 용				

귀 업소를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 다음과 같이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제 천 시 장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 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주소	
의무자	성명	
과태료금액	원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채 천 시 장		

과태료 납부서

(수납은행 보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주소	
의무자	성명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인)	

영수필 통지서

(제천시 통보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주소	
의무자	성명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제천시장 귀하	

영 수 증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주소	
의무자	성명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취급자인	

제 호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부 의무자	①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② 주 소			
④ 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태료 금액		⑦ 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인)

제 호

과태료부과 취소(변경) 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① 고지금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제 천 시 장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 과 기 관		⑤ 납부통지서 번 호	
	⑥ 고지 받은 일자		⑦ 과태료금액	
	⑧ 과태료 처분사유			
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수 신

발 신 : 제 천 시 장(인)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폐기물관리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의제기자	① 성 명 (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②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 금액
	⑤ 부과기관	⑦ 이의제기 일자

첨 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10호 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① 일련 번호	② 통지서 번호	③ 과태료 처분 통지일	④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간		⑦ 금 액	납부의무자		⑩ 과태료 납부일	이 의 제 기	
				⑤ 당초	⑥ 독촉		⑧ 성 명	⑨ 주 소		⑪ 이의제기일	⑫ 법원통보일

관 계 법 령 발 취

관계법규	조 항	내 용	비 고
폐기물 관리법	제3조	<p>(적용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원자방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등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례안 제3조 관련
	제5조의2	<p>(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조례안 제20조 관련
	제7조	<p>(폐기물의 투기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문화유적지, 공원, 광장, 도로, 하수도, 하천, 산림 등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조례안 별표 8 과태료 항목 제1호 관련
	제13조	<p>(생활폐기물의 처리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한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p>조례안 제4조 관련</p> <p>조례안 제7조 관련</p> <p>조례안 제20조 관련</p>

관계법규	조 항	내 용	비 고
폐 기 물 관 리 법	제15조	<p>(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조례안 제5조 및 제24조 관련
	제16조	<p>(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 시설 또는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그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례안 제25조 관련
	제24조	<p>(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틀 비치하고 처리실적 등을 기록하되 그 보존기간을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지침을 정당한 사유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조례안 별표8 과태료 항목 제5호 관련</p> <p>조례안 별표8 과태료 항목 제6호 관련</p>
	제26조	<p>(폐기물처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례안 제8조 관련

관계법규	조 항	내 용	비 고
폐기물 관리법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례안 별표8 과태료 항목 제7호 관련 조례안 별표8 과태료 항목 제8호 관련
	제39조	(기술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조례안 별표8 과태료 항목 제9호 관련
	제40조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체에 종사하는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담당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조례안 별표8 과태료 항목 제10호 관련
	제43조	(보고·검사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하게 할 수 있다. 	조례안 별표8 과태료 항목 제11호 및 제12호
	제44조의2	(폐기물재생처리 신고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폐기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원료·재료·연료등으로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시설·장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조례안 별표8 과태료 항목 제7호 및 제13조 관련

관계법규	조항	내용	비고
폐기물관리법	제47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등)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자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례안 별표8 과태료 항목 제14호 관련
	제63조	(과태료) < 내용생략 >	조례안 별표8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폐기물 수집·운반기준) ○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것. 다만, 시·군·구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	조례안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 관련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 제2호 가목(2)	○ 사업장생활폐기물중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조례안 제5조 관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당해 지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	조례안 제26조 관련

관계법규	조 항	내 용	비 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6조	(집하·보관장소 설치대상 재활용가능자원등) ○ 재활용가능자원이라 함은 폐금속류, 폐종이, 폐유리, 폐프라스틱 등을 말한다. ○ 대형폐기물 등을 운영·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조례안 제26조 관련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97. 5월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이면을 활용 상업광고 게재) ○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쓰레기종량제 이미지를 훼손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업광고를 이면에 게재토록 규정	조례안 제11조 제3항 관련